

의안번호	2210777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5.
추 계 번호	25F32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활용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 활용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－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요건: ①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②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③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④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한 국내 제조 소재·부품·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－ 공제율: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의 10% ※ 단, 재화생산비는 출고가의 10% 이내에서 인정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30% － 적용기한: 2030.12.31. ※ 동 조항은 미공제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고,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은 배제	
2	안 제144조의2 (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－ 환급요건: ①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생산공장이 수도권과 밀역제권역외 또는 접경지역에 소재 ②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에 연속하여 결손 발생 － 환급률: 미공제금액의 50%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 활용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 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4조의2 (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환급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활용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, 제144조의2 신설)
 - 안 제100조의35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정 요건에 맞게 생산한 경우, 해당 재화를 국가전략기술재화로 규정하고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－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는 기업
 - －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요건:
 - ①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
 - ②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
 - ③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
 - ④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한 국내 제조 소재·부품·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
 - － 공제내용: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의 10%
 - ※ 단,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는 출고가격의 10% 이내에서 인정
 -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30%
 - － 적용기한: 2030.12.31.
 -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경우 미공제금액에 대해

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,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불가

- 안 제144조의2는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,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의 50%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

－ 환급요건:

- ①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생산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또는 접경지역에 소재
- ②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에 연속하여 결손 발생

－ 환급내용: 미공제금액의 50%에 대해 환급

※ 단, 환급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가전략기술재화 생산기업의 법인세액 및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국가전략기술재화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가전략기술재화의 범위,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요건 중 업종별 재료비 대비 국내 제조 비중, 생산비용의 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
－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이동·운송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 등이 있으나, 개별 제품의 국가전략기술재화 포함여부와 업종별 재료비 대비 국내 제조 비중요건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판단할 수 없음

－ 또한,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생산비용 산정방식 등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를 추정할 수 없음

- 또한, 국가전략기술재화 중 국내에서의 최초 사용 및 최종공정 완료 등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
－ 국가전략기술재화의 범위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비중, 최종공정이 국내에서 완료된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
- 국가전략기술 활용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동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발생에 따른 환급특례의 세수효과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